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10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영철

나. 제안이유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동세탁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무명칭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최초위탁 : 2021. 7. 14. ~ 2024. 12. 31.(3년 6개월)

(다) 위탁사무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1) 위 치 : 구미시 산호대로 185(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 1층)

(2) 사 업 비 : 316백만원(시비)

(3) 규 모 : 건축연면적 1,293㎡(지하 1층, 지상 3층)

(4) 주요시설 : 세탁기 3대(50kg 2대, 20kg 1대), 건조기 3대(80kg),
상의 프레스기 1대, 스팀다리미 1대, 기타 세탁용품 등

(5) 운영인력 : 6명(팀장 1, 회계 1, 배송 2, 세탁 2)

(6) 이 용 료 : 하복 1벌당 500원 / 동복 1벌당 1,000원

구 분	가 격	비 고
하절기(4~9월)	1벌당 500원	기본수선 무료
동절기(10~3월)	1벌당 1,000원	
동복 점퍼 및 고급소재	1개당 1,000원	
심층오염 제거		

(마) 추진실적

(1) (2021년) 세탁량 : 4,907벌 (9,815장), 수입금 : 3,660천원

(2) (2022년) 세탁량 : 27,529벌(55,058장), 수입금 : 20,619천원

(3) (2023년) 세탁량 : 38,699벌(77,398장), 수입금 : 28,598천원

(바) 소요예산 : 316,000천원 ※ 2025년 추계액 기준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

(3) 평가방법 :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심사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기 동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산호대로 185(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21년 4,907벌, '22년 27,529벌, '23년 38,699벌의 작업복을 세탁하였고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에 의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 및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간위탁제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나 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또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충분히 인지 후 준수하기 바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